

| | |
|-----------|--------------------|
| 의안번호 | 제470호 |
| 의결 연월일 | 2023. . . (제 회)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470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 의 자 : 박봉순, 이상정, 김정일,
안치영, 안지윤, 조성태,
임병운

1. 제안이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 비혼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민간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

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3.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자립지원
4. 보건·의료서비스
5.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6.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7. 미혼모·부 주거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자립지원
9.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다.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산 전·후 미혼모 등에게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생활비 등 긴급지원
- 출산 전·후 미혼모·부 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긴급 생활비 등 지원
- 출산 전·후 미혼모·부 등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주거지원비

3. 관련조문

- 안 제7조제1항제5호(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 안 제7조제1항제7호(미혼모·부 주거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 (5년간)

나. 추계 결과 : 200,000천원

-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 45,000천원
 - 45,000천원 × 1인 = 45,000천원
- 긴급지원 사업비 : 55,000천원
 - 임신확인서 발급 검사비용 : 100천원 × 10인 × 1회 = 1,000천원
 - 긴급생활비 지원 : 300천원 × 20인 × 최대 6개월 ≒ 34,000천원
 - 산후조리비 지원 : 2,000천원 × 10명 × 1회 = 20,000천원
- 주거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 45,000천원
 - 45,000천원 × 1인 = 45,000천원

○ 주거지원 사업비 : 55,000천원

- 신규주택 임대보증금 : 9,000천원 × 4호 = 36,000천원
- 주택관리 및 입주자 지원 : 3,000천원 × 4호 = 12,000천원
- 심리검사 등 위기지원 : 7,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24년) | 2차년도 (2025년) | 3차년도 (2026년) | 4차년도 (2027년) | 5차년도 (2028년) | 계 |
|----------------------------|-------|-----------------|-----------------|-----------------|-----------------|-----------------|-----------|
| 세 출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 | 45,000 | 45,000 | 45,000 | 45,000 | 45,000 | 225,000 |
| 긴급지원 사업비 |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275,000 |
| 주거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 | 45,000 | 45,000 | 45,000 | 45,000 | 45,000 | 225,000 |
| 주거지원 사업비 |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275,000 |
| 재원 조달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지방채 | | | | | | | |
| 기금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시·군비 | | |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